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3년 5월 | 2023/05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국제사무국에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새로운 방법

WIPO Pay 플랫폼에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출원료를 납부하기 위한 온라인 납부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애플페이(Apple Pay), 구글페이(Google Pay) 및 삼성페이(Samsung Pay) 계정이 있는 출원인께서는 “eWallet”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출원인께서도 eWallet 을 통해 국제사무국(IB)에 스위스 프랑(CHF)으로 보충적조사료와 보충적조사 취급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다른 수수료들은 현재 WIPO Pay 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WIPO 에의 PCT 수수료 납부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fees/index.html>

PCT 정보 업데이트

조사료(여러 관청)

2023년 6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해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캐나다 지식재산청CHF
유라시아 특허청CHF, EUR, USD
유럽 특허청NOK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USD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특허청CHF
스웨덴 지식재산청(PRV)NOK
북유럽 특허기구NOK

2023년 7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해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EUR
오스트리아 특허청KRW
싱가포르 지식재산청KRW
이스라엘 특허청EUR
대한민국 특허청EUR, SGD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USD

상기 변동금액은 수수료표(Fee Table)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T), (AU), (BR), (CA), (EA), (EP), (IL), (KR), (RU), (SE), (SG) 및 (XN) 업데이트)

취급료 (호주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대한민국 특허청)

2023년 6월 1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호주 특허청에 AUD 로 납부되고, 캐나다 지식재산청에 CAD 로 납부되며, 대한민국 특허청에 KRW 로 납부되는 취급료의 등가액이 각각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AUD 338, CAD 294 및 KRW 286,000 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 (AU), (CA) 및 (KR) 업데이트)

새로운 WIPO 자료

특허동향보고서: 코로나 19 관련 백신 및 치료법

WIPO 특허동향보고서 최신회에는 전 세계 혁신가들이 코로나 19 팬데믹과 싸우기 위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수천 건 출원했으며, 대부분의 출원 제품들이 코로나 감염 환자들을 돕기 위한 치료와 관련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미국, 대한민국, 독일 및 영국이 2020년 1월에서 2022년 9월 사이에 출원된 특허 7,758 건의 최다 출원국들이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PR/2023/900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3/article_0003.html

참고로, “특허 정보 접근을 위한 툴 개발(Developing Tools for Access to Patent Information)”이라는 개발 어젠다(Development Agenda) 프로젝트에 따라 WIPO 는 공중보건, 식량안보, 기후변화, 환경과 같은 개도국 및 최저개발국의 특별 관심분야에 대한 특허동향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허동향보고서 다른 호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atentscope/en/programs/patent_landscapes/

PCT 성공 사례

RES 기가튜브 – 수직축 풍력터빈용 새로운 구조 및 전기시스템

PCT 사용자들께서는 PCT 웹사이트의 “PCT 성공 사례” 페이지에서 본인의 발명에 대한 보호를 취득하는 데 PCT가 도움이 된 사례를 소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성공 사례는 선별되어 PCT 웹사이트와 WIPO 소셜 미디어에서 소개됩니다(단, 이미 공개된 PCT 출원 대상).

한 개인 발명가가 수직축 풍력터빈용 새로운 구조 및 전기시스템에 대한 특허 보호를 취득하는 데 PCT가 도움이 된 새로운 사례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2023/news_0013.html

해당 사례의 발명에 대한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당 PCT 공개출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PCT 성공 사례 페이지는 여러분이 본인의 사례를 기고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하며 PCT 공개언어 10개 모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success_story/success_story.html

유용한 도움말

국제단계 동안 명백한 잘못의 정정

Q: 제가 몇 달 전에 제출한 PCT 출원의 발명의 설명에 오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water”(물)가 “wafer”(웨이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개 전에 오타를 정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기관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PCT 규칙 91에 따라 잘못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 규칙은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이나 기타 서류상의 명백한 잘못은 출원인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정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정신청은 우선일로부터 2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PCT 규칙 91.2),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잘못에 대한 정정신청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해당 잘못이 출원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출원서(request)상의 잘못(PCT 서식 RO/101)

수리관청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상의 잘못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관할기관이 아닌 경우)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어 취하되지 않았으며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해야 하는 날이 지난 경우,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상의 잘못 또는 조약 제 19조나

제 34조에 따른 보정서상의 잘못

국제예비심사기관

상기 외 다른 서류상의 잘못

해당 서류를 제출한 기관

질문하신 잘못은 발명의 설명에 있으므로 국제조사기관에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PCT 규칙 91.1(f)에 따른 해당일(국제출원일, 또는 잘못이 출원 시의 국제출원 이외의 다른 서류에 있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일) 현재 관할기관에 아래의 사항들이 명백한 경우에만 관할기관은 해당 잘못의 정정을 허가합니다.

- 해당 서류에 나타난 것 이외의 무언가가 의도되었고,
- 제출된 정정된 내용 이외에 그 무엇도 의도될 수 없었음. (PCT 규칙 91.1)

이에 따라, 언어적 오류, 문법적 오류 또는 철자 오류와 같은 오류는 해당 공개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화학식이나 수학식상의 잘못은 올바른 식이 상식이거나 해당 출원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첫 번째 기준이 두 번째 기준보다 충족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설명에 나온 수학식이 “ $1+2=3$ ”이었어야 했는데 “ $1+2=5$ ”로 기재된 경우, 출원인이 이것이 잘못이었고 “ $1+2=5$ ” 이외의 무언가가 의도되었다고 관할기관을 설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 $1+2=3$ ” 이외에 그 무엇도 의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 $3+2=5$ ”, “ $1+4=5$ ” 또는 어떤 다른 가능성도 의도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도면이 흐릿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해당 도면이 잘못으로 흐릿하게 나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제출한 선명한 도면 이외에 그 무엇도 도면으로 제출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관할기관에 설득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상의 잘못에 있어 정정에 대한 관할기관의 결정은 오로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기초하여 내려지며(PCT 규칙 91.1(d)), 따라서 우선권서류의 내용은 고려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출원서상의 잘못의 경우에는 수리관청인 관할기관이 해당 국제출원에 대해 동 기관이 입수할 수 있는 우선권서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91.1(e)).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에 나온 “wafer”가 잘못이었고 “water” 이외에 그 무엇도 의도되지 않았다는 점이 처음 출원 시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상 국제조사기관에게 명확해야 합니다.

참고로 PCT 규칙 91(PCT 규칙 91.1(g))에 따라 정정될 수 없는 잘못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약 제 3조 제 2항에 나온 국제출원의 용지 또는 요소의 누락(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PCT 규칙 20.3 내지 20.8 참고)
- 요약서상의 잘못(PCT 규칙 38.3 참고)
- 조약 제 19조에 따른 보정상의 잘못(국제예비심사기관이 관할기관이 아닌 경우)
- 우선일의 변경을 초래할 우선권주장상의 잘못

정정신청은 우선일로부터 26개월 이내에 관할기관에 도달해야 합니다. 신청 서한에는 정정할 잘못과 정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체용지를 함께 첨부하셔야 하며, 원하시면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정정된 내용의 기재 방식은 PCT 규칙 26.4 준용).

관할기관에 따라 ePCT에서 수신인 선택 후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s) 액션을 사용해 정정신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ePCT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과 관련된 별도 액션은 없습니다. 추가 내용은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006>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신청이 수락되면 관할기관은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에 공개를 위한 정정된 용지를 제공합니다. 정정된 용지가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면 국제사무국은 승인된 대체용지와 함께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 정정신청 서한, 그리고 표지의 수정본을 공개합니다(PCT 규칙 48.2(i)).

지정관청은, 규칙 91.3(a)에 따라 관할기관의 정정허가를 통지받은 날 전에 해당 국제출원의 처리 또는 심사를 이미 개시한 경우,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지정관청은 동 관청이 관할기관이었다면 규칙 91.1에 따라 허가하지 않았을 정정을 무시할 수 있으나, 출원인에게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는 부여해야 합니다(PCT 규칙 91.3(f)).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상의 잘못을 국제단계 동안 정정할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각 지정관청에서 보정의 기회가 있으므로(PCT 조약 제 28 조), 국내법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국내단계 동안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상의 보정을 통해 해당 잘못을 수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편 11.033 내지 11.044 단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guide/en/gdvol1/pdf/gdvol1.pdf>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갱신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협정

중국 국가지식산업국(CNIPA)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새로운 웹기반 EPO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

수리관청들의 전자출원 통지서 갱신

PCT 규칙 12.1(d)에 따라 서열목록 내 언어의존적 자유텍스트(**free text**)에 대해 인정되는 언어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수수료)

BY 벨라루스 (팩스 번호)

CA 캐나다 (수수료)

CV 카보베르데 (수수료)

EP 유럽특허기구 (수수료)

KN 세인트키츠네비스 (위치 및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MY 말레이시아 (수수료)

NO 노르웨이 (수수료)

RS 세르비아 (국제공개 후 임시 보호, 수수료)

SA 사우디아라비아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SE 스웨덴 (수수료)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새로운 웨비나 녹화자료

ePCT 웨비나 시리즈 녹화자료 및 발표자료 - 재공지